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양 산 시 의 회 의 장

2022년 12월 15일

양산시의회규칙 제110호

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것은 의장이 허가하고"를 "것과 출산휴가는 의장이 허가하고, 그 밖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휴가의 마지막 날이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있어야 하며,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

제65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